

## 特許權利範圍의 訟事

—無効訴는 美가 勝訴確率 높아—

스위스의 벨쿠로 소시에티 아노늄會社는 日本의 生駒酸物會社와 日本픽터會社를 相對로 自社 特許權의 侵害訴訟을 提起한 바 있다.

原告의 主張인즉 서로 걸리게 되어 있는 止鉤部材를 갖춘 2個의 支持體로 形成된 2개의 可撓性部分을 連結하는 파스나의 支持體의 한쪽은 그 表面上에 多數의 갈고리를 갖추었고 다른 지지체는 그 표면상에 多數의 루프를 갖춘 것을 特徵으로 하는 파스나를 權利範圍로 한 특허권의 權利侵害이므로 그 製造·販賣로 中止하라는 內容이다.

同 事件의 爭點은 한쪽의 지지체에 多數의 루프가 있는 점은 特許發明과 비슷하나 다른 지지체는 특허발명과 같이 鉤型이 아니고 버섯型이라는 焦點이 모아진다.

提訴를 接受한 日本大阪地法은 벨쿠로의 發明以前에는 갈고리와 갈고리를 2개의 지지체에 各各對向的으로 갖춘것이나 또는 곧바로 선 各糸의 끝에 걸리는 製置를 構成하는 구슬과 그 외의 膨脹部分을 造形한 2개의 지지체에 각각 대향적으로 조금 늦추어 備置한 것은 公知였으나 이같은 파스나의 止鉤部로서 한쪽의 지지체에 루프를 使用한 先行技術은 없으므로 벨쿠로의 특허는 한쪽지지체의 지구부재에 루프를 採用한데에 발명의 中核이 存在한다고 우선 認定하였다.

따라서 地法은 벨쿠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被告인 日本側兩社에 敗訴判決을 宣告하였다.

그러나 抗訴를 받은 大阪高法은 原判決을 取消한다고 판결함으로써 原審被告들이 逆轉勝하였고 日本言論界는 大書特筆한 바 있다.

高法判斷의 基本觀點은 버섯型小片과 벨쿠로

의 갈고리와의 作用效果의 差異를 인정한데 있다.

이 사건은 그 후 大法院에서 爭訟中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特許管理라는 觀點에서 볼때 抗告에서의 勝訴原因은 日本側 2個企業이 自國內 爭訟이므로 訴訟活動에 積極의이고 便利하였다는 有利한 高地에서의 訟事였다는 印象이 當時 關係者들의 衆論이기도 하다.

그 實例로서 日本側 2個企業은 大阪府立纖維工業指導所의 實驗結果의 證據를 提示하는 등 활발한 訴訟活動을 展開하였음을 들 수가 있다.

訟事慣例로서는 當事者의 努力이 勝敗의 갈림길에 된다는것도 無視할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특허권리범위의 檢討에는 그 登錄原簿 및 出願에 관한 關聯書類의 調査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資料는 特許權의 履歷書와 같은 것이며 公報의 記載만으로는 매우 理解하기 어려운 權利解釋上의 根據를 提供할지로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訴訟上 特許權이 無効라는 反論이 裁判過程에서 擧論되지 않게끔 되는 國家도 있으나 美國등에서는 被告는 反訴로서 특허권의 무효를 다룰 수가 있으며 1960年에서 71年까지 11年 間에 걸쳐 聯邦高法이 提訴審理特許의 69%를 무효로 하였다는 統計로 미루어 爭訟事件의 無効確率이 높음을 認知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提訴는 慎重히 생각하되 자료도 充分히 蒐集하여 소송에 부딪친다는 證左로 理解할 수가 있다.

反面 日本에서는 특허권의 有無効의 판단은 特許廳의 專權이며 法院은 어디까지나 有効한 권리로서 取扱하고 있다는 斯界의 批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